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종합감사 결과

1. 감사개요

- ▣ 감사기간 : 2019. 7. 1. ~ 7. 18.(14일간)(아시아문화원 병행)
- ▣ 감 사 반 : 감사담당관 등 7명
- ▣ 대상기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 감사내용
 - 조직·인력·복무관리 등 기관운영 적정성
 - 예산편성·집행 및 계약 업무처리 적정성
 - 아시아문화 콘텐츠 사업 관리 실태
 - 문화전당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실태
 - 물품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2. 감사결과

(단위: 건, 명, 천 원)

합계			정계 (인원)	시정 (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수사 요청	현지 조치
건수	금액	인원						계	일반	인사 (인원)	모범 사례 (인원)		
17	-	1	-	-	10	-	-	7	6	-	1 (1)	-	-

3. 감사처분 요구 내용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
1	<p>○ 문화상품 개발 및 운영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23백만 원의 예산으로 97종 48,961점의 문화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나, 문화상품 별 판매현황(연도별, 종별)을 기록·관리하지 않고 있고, 잔여 상품 84종 31,640(64%)점에 대한 판매활성화 및 문화전당 홍보기념품으로의 활용이 미흡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문화전당(전시, 공연 등)을 홍보하기 위한 기념품으로의 활용 등 연계 미흡* <p>* 2016~2019. 6월까지 홍보기념품 구입예산 742백만 원 중 기존 문화상품 구입에 34백만 원(약 4.5%) 집행에 불과</p>	<p>○ 주의/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상품 판매현황 기록·관리 철저 - 문화상품의 문화전당 홍보 활용 및 판매 활성화 방안 마련
2	<p>○ 복합2관 전시실 안전관리 등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문화창조원 내 복합2관의 전시실을 관리위탁 계약(2016. 6.~2024. 6.)을 체결·관리하면서,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을 누락 하였으며, 전시실 바닥의 구조내력상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았는데도 구조물 철거 및 보강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등 안전관리 소홀 	<p>○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령 준수 및 안전관리 업무 철저
3	<p>○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안전관리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공연장의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관리하면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운영자 변경등록 누락, 관할구청(광주 동구청)에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 미제출, 안전관리 조직 미구성, 안전교육 미실시 등 공연장의 안전관리 소홀 	<p>○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 안전관리 업무 철저
4	<p>○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장애수리 등 유지관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부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총 437대 중 장애 발생으로 1개월 이상 정상 작동되지 않는 CCTV 총 19대에 대해 부품 확보 지연, 호환불가 등의 사유로 수리·대체 없이 방치하고 있는 등 CCTV의 유지·관리 소홀 	<p>○ 주의/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관리 업무 철저 -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개선방안 강구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
5	<p>○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사용료 징수 등 관리·운영 부적정</p> <p>- 광주서구청 청사를 이전받아 리모델링(2016년)하여 ‘아시아창작스튜디오’로 관리·운영하면서, 리모델링(2015. 7.) 이후 건축물대장 표시사항을 변경(구내식당을 다목적실로 변경, 기사대기실 등 부대시설 철거)하지 않았고, 2016년 광주예총에 사용허가(임대)한 시설에서 발생한 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부담하고 있으며, 2019년 □○과 국유재산 사용료(2,750만 원) 분할납부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예치 등 이행보증조치 소홀</p>	<p>○ 주의/통보</p> <p>- 건축물대장 관리 등 관련 업무 철저</p> <p>- 임대 시설 공과금 사용자 부담 조치</p>
6	<p>○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정보자원 관리 부적정</p> <p>-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연구비로 추진해야할 정보 시스템 개선 및 구축 용역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등으로 추진하였고, 사업계획을 부실하게 하여 특정 기능(제휴관련 기능)이 구현되지 않거나, 구축한 일부 기능(키오스크와의 다국어 서비스 연계)들이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서비스가 중단된 기능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비를 책정하고, 신규 도입한 하드웨어(22대)와 소프트웨어(10식)를 범정부 EA·국가기준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지 않는 등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정보자원관리 부적정</p>	<p>○ 주의/통보</p> <p>- 정보화사업 관련 업무 철저</p> <p>- 미활용 기능을 제외한 유지관리비 재산정</p>
7	<p>○ 국고보조금 정산 등 보조사업 관리 부적정</p> <p>- “201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 공연전시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시아문화원이 사업실적보고(정산보고) 지연, 교부내역과 달리 홍보용품 구입 등 교부조건 등을 지키지 않는데도 문화전당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관리 부실</p>	<p>○ 주의</p> <p>- 보조금관리 업무 철저</p>
8	<p>○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지역 디자인랩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p> <p>-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 사업인 문화전당 인근 점포(동명동 일대)의 간판 및 유리문시트지, 메뉴판 등 내·외부 미관 개선사업을</p>	<p>○ 주의</p> <p>- 국가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추진하는 등</p>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
	국고보조사업(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지역 디자인랩 시범사업(2018년))으로 추진하였고, 동 보조사업자 선정 위원도 부적정하게 구성(「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상 5인~15인 이내이나 3인으로만 구성)	관련 업무 철저
9	<p>○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조치 이행 부적정</p> <p>-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2016년~2019년 5월) 실시 이후 안전진단 기관이 지적한 균열 등에 대한 필요조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본관동 균열(보수 대상), 주차장 누수 등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별도 조치계획 미수립 등 이행 부적정</p>	<p>○ 주의</p> <p>-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업무 철저</p>
10	<p>○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등 구매 업무 부적정</p> <p>-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의 10% 이상), 장애인기업제품(총 구매액의 1%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총 구매액의 1% 이상) 등의 의무구매비율을 2016년부터 일부 미준수</p>	<p>○ 주의</p> <p>- 중소기업제품 구매 관련 업무 철저</p>
11	<p>○ 관용차량 관리 부적정</p> <p>- 총 4대의 관용차량을 보유·운영하면서,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를 활용하지 않고 있고,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과 달리 담당자가 주유소 간 가격 비교 없이 임의로 인근 주유소에서만 주유</p>	<p>○ 통보</p> <p>-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활용 방안 마련</p>
12	<p>○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적극대응으로 예산절감 기여</p> <p>- 광주동구청이 문화전당 신설 부설주차장(15,005.864㎡)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68백만 원을 부과한데 대해 오수 발생량 산정의 적정 여부 검토(실제 발생면적 51.08㎡/화장실)와 이의 신청 및 환경부 질의 회신 등을 통해 부담금 전액을 감면받아 예산 절감에 기여</p>	<p>○ 통보(모범)</p> <p>- 업무 관련자 포상, 성과급 지급 등의 사기진작 방안 마련</p>
13	<p>○ 아시아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위임 절차 부적정</p> <p>-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문화원(준정부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문화전당(소속기관)에게 위임하면서,</p>	<p>○ 통보</p> <p>- 위임사무 근거·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 위임사무를 고시하는</p>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사무의 근거·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고시 절차를 다르지 않은 채 정관변경 및 결산서 승인권한 등 실질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	방안 마련